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4. 11 선고 2023가단2256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(변경 전: C)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1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0. 6. 19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성구

별지